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7. 17.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담당자	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염광은, 주무관 정학희 • ☎ (044) 201-3341, 3349
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	• 과장 박주영, 사무관 김기태 • ☎ (02) 2100-2840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디딤돌 · 보증자리론 · 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오는 7월 29일부터 7년으로 확대됩니다.

- 금일 「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」에서 발표한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(혼인기간 5년→7년)는 오는 7.29일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-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정책 대출 및 보증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< 관련보도자료(7.17, 기획재정부) >

◆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염광은 사무관(☎ 044-201-33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